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1]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원인 및 갑5(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3. 2. [redacted]구 D 외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원고 A 5/10 지분, 원고 B 4/10 지분, 원고 C 1/10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6층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 3, 5층에 관하여 'E 요양원 2호점'으로 구 노인복지법(2017. 3. 14. 법률 제1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5. 22. 이를 수리하였다.

다. 한편, 원고 C은 2012. 5.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E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한 바 있는데, 2015. 5. 22. 위 보호센터의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6층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 5. 18. 위 보호센터를 폐업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6층에 'E 요양원 재가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구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피고의 수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다음, 4층은 공실로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6층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6. 4. 29.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redacted]광역시장은 2016. 6. 23.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고, 6층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2.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요지

원고들이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E 요양원'으로 운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하여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전설치신고만으로도 취득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믿었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 3, 5, 6층을 모두 실제로 'E 요양원'으로 운영하였던 점,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인 점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6층은 해당 용도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과세요건의 구비여부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2) 검토

㈎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호),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위 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호),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4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제1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제2호)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6층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3. 2.경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2015. 12. 2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 및 2015. 12. 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리한 경우라면 원고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2015. 12. 2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바, 위 각 법령 중 어느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정 전·후의 법령이 모두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6층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다.

㈏ 이 사건 건물 6층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었는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6층이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외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까지 설치신고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실제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동일시할 수 없다.

① 구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그 설치 목적, 운영방법,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시설 또는 기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정·설치되는 기관이 서로의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정·설치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지정·설치신고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특히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32조 제1항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과는 달리, 노인복지법 제31조가 정한 노인복지시설일 것을 요하지 않고[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6. 11. 8. 대통령령 제27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행정관청의 지정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요하지 않으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1항, 설치신고를 요한다), 그 시설 및 인력기준도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바, 구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달리 구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의 기준을 추가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호센터는 원고 C을 대표자로 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으로, 2015. 5. 22. 이 사건 건물 6층을 소재지로 하여 이전설치신고 되었으나, 2016. 5. 18.까지 별도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E 요양원 2호점'은 원고들을 공동대표자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2012. 5. 22. 이 사건 건물 2, 3, 5층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이 이루어졌다. 위 각 시설은 그 운영주체와 시설용도 등을 분명히 달리하고 원고들 역시 그 설치신고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같은 날 그 소재지를 달리 명시하여 각 시설 등의 설치신고·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6층을 2, 3, 5층과 일체로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다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도 구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이 정한 설치기준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준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구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는 설치신고 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 3, 5층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각각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6층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6층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과 개정 전·후 법령 모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2, 3, 5층에 관하여 별도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6층에 관하여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필요 없다고 믿은 것은 원고들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들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 6층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나 2015. 12. 29. 개정된 지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특례제한법령 중 어떤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6층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 내역2)

(단위: 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A	1,837,310	153,810	76,900	2,068,020
B	7,349,280	615,270	307,630	8,272,180
C	9,186,610	769,100	384,540	10,340,250

2) 각 가산세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별지2]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637호,2015.12.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본조신설 2015.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6837호,2015.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 구 노인복지법(2017. 3. 14. 법률 제1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1.25, 2011.6.7>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3.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2015.1.16>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1. 재가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6. 11. 8. 대통령령 제27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6.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제11조에서 이동 <2008.6.11>]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2010.9.1, 2014.2.14>

③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06

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제12조에서 이동 <2008.6.11>]